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 사유

동네체육시설(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)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와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.

2. 제안근거

-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
-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
3. 주요 골자

○ 취득대상

- 토 지 : 대가면 옥성리 755번지. 답. 1,653㎡(500평)
 · 소요예산액 : 50,000천원 정도

붙 임 : 1. 2002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1부.
2.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서 1부. 끝.

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(총괄)

(단위:㎡,천원)

구분			상반기			하반기			합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	1,653	50,000				1	1,653	50,000	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1	1,653	50,000				1	1,653	50,000	군비
	2. 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 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 매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 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무상사용 및 대부 허가	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

(단위 : ㎡, 천원)

연번	재 산 의 표 시				취득예상 가 격	소유자 주소.성명
	소 지 지	지번	지 목 (구조)	면적		취 득 사 유
1	성주군 대가면 옥성리	755	답	1,653	50,000	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748-1번지 백분연 생활체육시설(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) 설치부지
		이	하	여	백	